

구 리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 2407호
2024년 05월 29일(수)

차 례

자치법규

- 구리시 규칙 제1097호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구리시 규칙 제1098호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시공고

- 구리시 고시 제2024-56호 구리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

회람

2024년 제9회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9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 명)

구리시 규칙 제1097호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별표 4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능사(지적)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에 규제개혁란 다음에 적극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적극행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1위	0.4
	• 2위	0.3
	• 3위	0.2

별지 제1호서식 중 사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총무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 · 성명	총무과장 강 성 수
	팀 장 직위 · 성명	인사조직팀장 박정희
	주 무 관 성명 · 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신인철 550-211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8항 관련)

1. 별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삭제)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산점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함. (제7조)

나.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중 지적 직류 응시자격증에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자격증을 삭제함. (별표 4)

다.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등)’로 수정하고,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하며, 9호 경채(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경력 요구를 폐지함. (별표 5의3)

라. 실적가산점 항목 및 배점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에 대한 실적가산점을 신설함. (별표 19)

마.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함. (별지 제1호서식)

2024년 제9회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9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규칙 제1098호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교문도서관”을 “교문방정환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교문도서관”을 “교문방정환도서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문”을 “교문방정환”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시립도서관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 · 성명	시립도서관장 김 영 미
	팀 장 직위 · 성명	교문도서관팀장 김 경 희
	선임주무관 성명 · 전화번호	지방사서주사 금진희 550-2239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교문도서관의 명칭을 교문방정환도서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도서관 명칭이 포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 명칭을 “교문도서관”에서 “교문방정환도서관”으로 변경함. (제5조,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구리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81호(2007.07.30.)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2007.12.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08-60호(2008.12.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9-137호(2019.10.0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상의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4. 5. 29.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나. 명 칭 :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 나. 구역면적 : 32,535m²
 - 1) 주택단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 : 21,382m²
 - 2) 기반시설 11,153m²
 - 가) 도로 6,465m²
 - 나) 공원 3,939m²
 - 다) 사회복지시설 749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상덕)

나.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76번길 35, 3층(수택동)

4. 준공인가의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대 지 면 적	21,382㎡	건 축 면 적	4,636.71㎡
연 면 적	78,251.94㎡	층 수	지하2층 ~ 지상16~20층
건 폐 율	21.69%	세 대 수	565세대
용 적 륜	249.46%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기반시설은 금회 준공에서 제외

5. 부분 준공일자 : 2024. 5. 29.

6.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균형개발과(☎ 031-550-2411)로 연락바랍니다.